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1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국제결제은행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 규정 신설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2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2.

(3) 회 부 일 : 2025. 8.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제결제은행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 규정 신설 (김영진 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21) ○ 면제 대상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의 이자·수수료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 - <신 설>	☐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현행과 같음) -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 국제결제은행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신설 ○ (현행과 같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비과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 - (투자방법) ① 또는 ② ①(직접투자) 국내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②(간접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한 투자

현 행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 국제기구 또는 적격 외국금융회사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 가능 - (신청 절차) 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은 시행령상 규정

*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1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4)

□ 개정안은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김영진의원안은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등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¹⁾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에 따르는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받는 국내원천 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 및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 2025년 4월 기준 63개국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국제결제은행이 보유한 자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제결제은행 자산 현황('25.3.31일 기준)]

	억 달러(USD)	조 원(KRW)
합계	5,731.1	840.5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43.8	167.7
환매조건부 매입증권	1,519.4	222.8
대출금	436.5	64.0
국채 및 기타 채무증권	1,782.5	261.4
금 및 금대여	539.2	79.1
파생금융상품	46.0	6.7
미수금 및 기타자산	260.4	38.2
토지, 건물, 장비	3.3	0.5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국제결제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 및 통화

-
- 9. 국제투자보증기구
 - 10. 유럽부흥개발은행
 - 11. 국제결제은행
 - 12. 미주개발은행
 - 13. 미주투자공사
 - 14. 다자투자기금
 -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 16.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 17. 중미경제통합은행

안정채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으로,²⁾ 1997년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가입할 당시, 면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되는 상황임. 한편, 주요국은 국제결제은행과의 협정 체결 또는 내국 법령상의 면세 규정을 통해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 역시 이를 근거로 각국에서 보유한 투자자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보장받고 있음.

[주요국의 BIS 면세 현황]

유 형		대상 국가	대상 소득
소재국 정부와 협정 (Host Country Agreement)		스위스, 홍콩,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모든 소득
내국 법령 (면세 조항)	국제기구	호주, 캐나다	
	외국중앙은행	미국	
	외국인 투자자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채권 투자소득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결제은행은 원화표지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채, 통화안정채권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요청하였고,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같이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이 비과세 될 경우,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통한 ① 국내금융기관의 영업기회 확대 ② 외환시장 참여자 다변화 ③ 시장유동성 제고 ④국

2) 「법인세법」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내 유가증권시장의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정부안은 현행법상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준하여³⁾ 국제금융기구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비과세의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의 형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안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는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상의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결제은행 이외에도 현재 소득에 면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다자투자자금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기구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그 조세 특례의 대상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

3) 「법인세법」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제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제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호의 기구가 받는”으로 명확히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정부안은 동 조항의 개정이유로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안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 되는 소득의 범위는 “국내원천 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 및 기타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화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면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김영진의원안은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등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과 같이 소득의 종류를 「법인세법」을 인용하여 나열하는 것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고, 법인세 감면의 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4)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획재정부